

#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 보고서

## 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12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09. 6. 15.
- 상정일 : 2009. 6. 18.(제160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## 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)

### 가. 제안이유

「토지구획정리 사업법」에 의거 시행되었던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000년 9월 23일 시작하여 2004년 7월 22일 까지 완료됨에 따라 「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「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### [ 법적검토 ]

- 본 조례안은 「토지구획정리 사업법」에 의거 시행되었던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자 「도시개발법」 제10조 제1항에 의거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-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.
- 사전절차 이행
  - 입법예고 : 2009. 5. 22 ~ 6. 11 (21일간)
  - 조례규칙심의회 : 2009. 6. 12

### [ 행정적검토 ]

- 본 조례안은 제천대원대학 및 세명대학교 주변의 계획적인 대학촌 개발을 위해 1999년 1월 14일 제정한 조례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월동 697번지 일원 142,322 제곱미터의 면적에 택지, 도로, 공원, 하천, 녹지, 주차장 등을 조성한 사업으로 2000년 9월 23일에 착공하여 2004년 7월 22일 완료된 사업임.
- 「도시개발법」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(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 처분)의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4년 7월 28일 본 사업의 환지처분 공고 이후 바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폐지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하지 않은 사항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4. 질의 답변 요지

### 가. 질의요지

- 2007. 7. 28 환지처분공고 이후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이유와 남아 있는 청산금의 처리방안은?(유영화 위원)

### 나. 답변요지 < 미래경영본부장 윤종섭 >

- 미징수된 청산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다 조례 폐지가 늦어졌으며, 미교부된 3명 1필지 1억6천만원정도에 대하여 연속성을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겠음.

## 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## 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## 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## 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- 제천시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1부. 끝.